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22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한규 · 김용만 · 박지원
박홍배 · 진선미 · 장철민
한병도 · 전현희 · 이원택
진성준 · 양부남 · 문대림
박정현 · 위성곤 · 박상혁
김태년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 · 관리 ·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 ·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공조형물”이란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의 미관, 경관조경, 역사적·문화적 가치 표현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2장에 제9조의6 및 제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공공조형물 기본정책 수립 등) ① 국가는 공공조형물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문화성, 경관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7(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조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조형물을 파손·절단·변형하여 그 기능 또는 외관을 해치는 행위

2. 도구를 사용하여 낙서, 도색,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오염시키거나
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
3. 광고물, 전단 등을 부착하는 행위
4. 인화물질,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조형물을 손
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훼손행위의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별칙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조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공공조형물”이란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의 미관, 경관조경, 역사적·문화적 가치표현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6(공공조형물 기본정책 수립 등) ① 국가는 공공조형물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문화성, 경관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이

<신 설>

전·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7(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조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조형물을 파손·절단·변형하여 그 기능 또는 외관을 해치는 행위

2. 도구를 사용하여 낙서, 도색,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오염시키거나 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

3. 광고물, 전단 등을 부착하는 행위

4. 인화물질,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조형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훼손행위의 방지 및 적발

<u><신 설></u> <u><신 설></u>	<u>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7장 벌칙</u> <u>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조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
---	--